「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첨단산업국장 조 영 열**
2. **제안이유**

가. 문화산단 조성의 일환인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산업유산의 역사성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청년 친화 광장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콘텐츠 도입을 통해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성공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합동「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024. 9.)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2025. 3.)

나)「지방자치법」 제117조

다)「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2) 필요성 : 공공개발 및 시설 기획·건축 분야 전반에 전문성을 지니고, 토목·건축 기술 인프라와 공사 감독·관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업무 전반

1)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에 관련된 용역 발주 및 관리

2) 사업관련 행정절차(관련 인·허가) 지원

3)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 공사 시행 등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추진 예정

라. 위탁시설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4. ~ 2030. 3. 예정

* 재생계획(변경) 승인 후 위탁 추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위탁

바. 소요예산 : 총 30,387.5백만원(국비 17,587.5, 도비 3,840, 시비 8,96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6년	'27년	'28년
계	30,387.5	9,591.25	9,648.75	11,147.5
국 비	17,587.5	5,491.25	5,548.75	6,547.5
도 비	3,840	1,230	1,230	1,380
시 비	8,960	2,870	2,870	3,22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추진계획(안) 결재('26.9.30.)

아. 위탁구분 : 신규위탁

※ 부서의견

○ 문화가 있는 청년친화형 산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중인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 동의안 의결 후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시설비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6. 10. 2.)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구 방림부지(공단동 282) 일원에 연면적 5,600㎡ 규모의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산업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유산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체육 콘텐츠 도입과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면밀히 이행하고, 노후 산단 근로자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대규모 투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